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79

발의연월일: 2024. 7. 16.

발 의 자:허 영·김남희·복기왕

김 현・김동아・김 윤

오세희 • 민병덕 • 윤건영

윤종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가 발생한 사실 등을 증명하면 제조물의 결함 및 해당 결함으로 인한 손해 발생 을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동차 등 고도의 기술을 바탕으로 제조된 제조물의 경우, 이에 관한 정보가 제조업자에게 편재되어 있어서 피해자가 제조물의 결함 추정을 위한 사항들을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 극히 어렵고, 제조물과 관련된 자료에 접근하기에도 현실적인 어려움 이 있어 피해자가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는 데 장애가 되고 있음.

이에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 제조물에 결함이 없었고,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조업자가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법원의 자료제

출명령제도를 도입하여 제조업자가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결함·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제출명령 불응 시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하며, 자료제출을 통한 영업비밀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종국적으로는 당사자 간 정보 비대칭성을 시정·보완하고 증거수집권이 균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제3조의3부터 제3조의6까지 및 제9조 신설 등).

법률 제 호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물 책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등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3조의3부터 제3조의6까지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자료의 제출) ① 법원은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

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 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에 해당하나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④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법원은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제3조의4(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제3조에 따라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영업비밀을 그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영업비밀을 알게 된자가 제1호에 따른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 또는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하였거나 제 출하여야 할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 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 ③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④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제3조의5(비밀유지명령의 취소) ①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내린법원을 말한다)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그 신청을 한 자 및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③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④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 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을 한 자 또는 상대방 외에 해당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즉시 비밀유지명령의취소 재판을 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제3조의6(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① 비밀유지명령이 내려 진 소송(모든 비밀유지명령이 취소된 소송은 제외한다)에 관한 소송 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결정이 있었던 경우

- 에, 당사자가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 절차를 해당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을 받지아니한 자가 밟은 경우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이 조에서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같은 항의신청을 한 당사자(그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게 그 청구 직후에 그 열람 등의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청구가 있었던 날부터 2주일이 지날 때까지(그 청구 절차를 밟은 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 신청이 그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는 시점까지를 말한다) 그 청구 절차를 밟은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2항은 제1항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아니한다.
- 제9조(벌칙) ① 국내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항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증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업자가 제조물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항			개 정 안
제3조의2(결함	등의	추정)	(생	제3조의2(결함 등의 추정) ① (현
략)				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 <신 설></u>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
				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등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
				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
				생한 경우에는 제조업자가 해
				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제
				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
				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
				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
				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u><신 설></u>				제3조의3(자료의 제출) ① 법원은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
				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
				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손
				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
				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

자가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정 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 1항에 따른 제출을 거부할 정 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 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할 자료가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에 해당하나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신 설>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법원은 그 당사자가 자료의기재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인정할 수 있다.

제3조의4(비밀유지명령) ① 법원 은 제3조에 따라 제기된 손해 배상청구소송에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 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 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 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 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 송으로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 에게 그 영업비밀을 그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 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 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 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 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 자를 말한다),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따른 준비서 면의 열람이나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 야 할 준비서면,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 또는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
 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
 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

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 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명 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 다)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 야 한다.
-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 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 하는 사실
- ③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④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 각하거나 각하한 재판에 대해 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조의5(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 설>

- ①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 는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요건 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소송기록을 보 관하고 있는 법원(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 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내린 법원을 말한다)에 비밀유지명 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그 신청을한 자 및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한다.
- ③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 고를 할 수 있다.
- ④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 생한다.
- 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비밀유지명 령의 취소신청을 한 자 또는 상대방 외에 해당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

<신 설>

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즉시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재 판을 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3조의6(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 구 통지 등) ① 비밀유지명령 이 내려진 소송(모든 비밀유지 명령이 취소된 소송은 제외한 다)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 의 결정이 있었던 경우에, 당사 자가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비 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의 청구 를 하였으나 그 청구 절차를 해당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가 밟은 경우에 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 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이 조에서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같은 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그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 에서 같다)에게 그 청구 직후 에 그 열람 등의 청구가 있었 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청 구가 있었던 날부터 2주일이

<신 설>

지날 때까지(그 청구 절차를 밟은 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 신청이 그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재판 이 확정되는 시점까지를 말한 다) 그 청구 절차를 밟은 자에 게 제1항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은 제1항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한 당사자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9조(벌칙) ① 국내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